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2
----------	------

발의년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박우근,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지만, 김태원,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윤기배,
윤영애, 홍인표, 황순자 의원

1. 제안 이유

-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교육감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제5조 (생략)</p>	<p>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p>
<p><신 설></p>	<p>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제6조~제8조 (생략)</p>	<p>제8조~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관 계 법 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

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垆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垆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④ 생략